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4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19. 8. 1.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
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간사와 서기 변경(안 제7조)

- “기획예산과장으로, 서기는 기획팀장”을 “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,
서기는 담당 팀장”으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없음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후단 중 “기획예산과장으로, 서기는 기획팀장”을 “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, 서기는 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간사와 서기) 각 회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 간사는 <u>기획예산과장으로</u>, 서기는 <u>기획팀장으로</u> 한다.</p>	<p>제7조(간사와 서기) ----- ----- ----- --- <u>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</u>, <u>서기는 담당 팀장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
해당

- ▣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마포1번가연구단 배현주 (☎3153-8082)